

입법예고

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
(검역정책과)

1. 개정이유

우편물·택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이 개정(법률 제20810호, 2025.3.18. 공포, 2025.9.19. 시행)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중 과태료 개정 사항을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(안 별표2 제2호 자목)

- 법 제50조제3항제4호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대상에 ‘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’ 명시

나. 신고를 지체한 경우 신설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 마련(안 별표2 제2호 차목)

* 위반 : (1회) 5만원, (2회) 10만원, (3회 이상) 20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12조제9항에 따른”을 “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”으로 한다.

별표2 제2호차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처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	법 제50조 제3항제4호의2	5	10	2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	----	----

별표2 제2호하목(현행 파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4호의2”를 “제4호의3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머목(현행 러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4호의3”을 “제4호의4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버목(현행 머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4호의4”를 “제4호의5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서목(현행 버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4호의5”를 “제4호의6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어목(현행 서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4호의6”을 “제4호의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조 관련) 1. (생략) 2. 개별기준 (단위: 만원)					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조 관련) 1. (현행과 같음) 2. 개별기준 (단위: 만원)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			1회	2회	3회 이상
가.~아. (생략)					가.~아. (현행과 같음)				
자.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 거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	법 제 50조 제3항 제4호	10	20	40	자.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 하는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하여 법 제 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역을---	법 제 50조 제3항 제4호	10	20	40
<신설>					차.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	법 제 50조 제3항 제4호 의2	5	10	20
차.~타. (생략)					카.~파. (현행 차목부터 타목까지와 같음)				
과. 법 제15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· 점검 또는 조사를 거 부·방해하거나 기피 한 경우	법 제 50조 제3항 제4호 의2	50	100	300	하. 법 제15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· 점검 또는 조사를 거 부·방해하거나 기피 한 경우	법 제 50조 제3항 제4호 의3	50	100	300

<u>하.~더.</u> (생 략)					<u>거.~러.</u> (현행 하목부터 더목까지와 같음)				
<u>러.</u> 법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·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의3	50	100	300	<u>며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의4	50	100	300
<u>며.</u> 법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·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의4	50	100	300	<u>버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의5	50	100	300
<u>버.</u>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의5	50	100	300	<u>선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	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의6	50	100	300
<u>선.</u> 법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의6	100	200	300	<u>언.</u> ----- ----- ----- ---	법 제50조 제3항 제4호 의7	100	200	300
<u>어.~저.</u> (생 략)					<u>저.~처.</u> (현행 어목부터 저목까지와 같음)				